

의안번호	2218199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6.7.14.
추 계 번호	26D201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후보자의 선거구 의원정수별로 완화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30년 184억 1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 (국선)	2029	2030 (지선대선)	2031	2032 (국선)	합계	연평균
기탁금 반환 기준 완화 (안 제57조제1항제2호)	—	—	895	—	—	895	179
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(안 제122조의2제1항제2호)	—	—	17,516	—	—	17,516	3,503
합계	—	—	18,411	—	—	18,411	3,682

- 주: 1. 기탁금 반환 기준 완화(제57조제1항제2호)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(제122조의2제1항제2호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 2. 개정안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(시·도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)에만 적용되므로,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(2030년)에만 추가재정소요 발생
 3.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(지역구)의 후보자수, 득표율, 선거비용 보전 집행액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7조제1항제2호 (기탁금의 반환 등)	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소속한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따라 차등화된 득표율 기준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 - 1인: 15% 이상 전액, 10~15% 반액(현행과 동일) - 2인: 12% 이상 전액, 9~12% 반액 - 3인: 9% 이상 전액, 6~9% 반액 - 4인 이상: 6% 이상 전액, 3~6% 반액	의무규정
2	안 제122조의2 제1항제2호 (선거비용의 보전 등)	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상기와 동일한 의원정수별 득표율 기준에 따라 보전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7조제1항제2호 (기탁금의 반환 등)	○	-
2	안 제122조의2 제1항제2호 (선거비용의 보전 등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수, 득표율, 선거비용 보전 집행액 등을 바탕으로 추계
-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선거구 의원정수별로 완화되어 반환·보전 대상자 수 및 금액이 증가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
 - 시·도의회의원선거는 전국 지역구 779개 전원이 의원정수 1인 선거구로, 개정안의 "1인" 구간 기준이 현행법과 동일하여 개정안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기탁금 반환·선거비용 보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
 - 이에 시·도의회의원선거는 추계에서 제외하고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만을 대상으로 함

[표 2]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: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

구분	의원정수	현행법		개정안 (의원정수별 차등)	
		전액	반액	전액	반액
일반 후보자	1인			현행법과 동일	
	2인	15%	10% 이상~	12% 이상	9% 이상 ~ 12% 미만
	3인	이상	15% 미만	9% 이상	6% 이상 ~ 9% 미만
	4인 이상			6% 이상	3% 이상 ~ 6% 미만
장애인·청년 후보자	1인			현행법과 동일	
	2인	10%	5% 이상 ~	9% 이상	6% 이상 ~ 9% 미만
	3인	이상	10% 미만	6% 이상	3% 이상 ~ 6% 미만
	4인 이상			3% 이상	1% 이상 ~ 3% 미만

주: 장애인·청년후보자(39세 이하)에 대한 개정안의 규정은 '기탁금 반환'기준에만 적용되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일반후보자와 동일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(2030년)에만 발생
 - 개정안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므로 대통령선거·국회의원선거에는 영향이 없으며, 보궐선거는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
 - 추계기간(2028~2032년) 중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30년에 실시되며, 2028년과 2032년은 국회의원선거, 2030년은 대통령선거 실시될 예정이나 추가재정소요는 없음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참고하여 적용¹⁾)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탁금 반환 기준 완화(안 제57조제1항제2호)

-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특례 기준을 선거구 의원정수별로 완화하여 기탁금 반환 대상자 수 및 반환액 증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
- 본 추계에서는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액, 반환 대상자 수, 추가 반환율을 곱하여 산출
 -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은 200만원이며 정액 규정으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 - 반환 대상자 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총람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4,423명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득표율을 전수조사하여 산출²⁾
 - 추가 반환율은 ①해당없음(현행법 미달)에서 반액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50%, ②해당없음에서 전액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100%, ③반액에서 전액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50% 적용

1)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 기준)

	2023	2024	2025	2026	2027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	2.4	2.1	2.3	2.0

2) 개정안은 기탁금 반환 기준 완화를 장애인 후보자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장애인 여부는 후보자 명부 자료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대상자 수는 본 추계에서 산출한 대상자 수보다 클 수 있음

[표 3] 기탁금 반환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과정

구분 (의원정수)	조건	기탁금액 (a, 원)	대상자수 (b, 명)	추가반환율 (c)	추가재정소요 (=a×b×c, 원)
2인	① 해당없음→반액	2,000,000	15	50%	15,000,000
	② 해당없음→전액		0	100%	0
	③ 반액→전액		95	50%	95,000,000
3인	① 해당없음→반액		126	50%	126,000,000
	② 해당없음→전액		57	100%	114,000,000
	③ 반액→전액		367	50%	367,000,000
4인 이상	① 해당없음→반액		41	50%	41,000,000
	② 해당없음→전액		52	100%	104,000,000
	③ 반액→전액		33	50%	33,000,000
합계			786	—	895,000,0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30년에 8억 9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기탁금 반환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(국선)	2029	2030(지선·대선)	2031	2032(국선)
기탁금 반환	—	—	895	—	—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(안 제122조의2제1항제2호)

-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특례 기준을 선거구 의원정수별로 완화하여 선거비용 보전 대상자 수 및 보전액 증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
- 본 추계에서는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, 보전 대상자 수, 추가 보전율을 곱하여 산출
-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은 「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」의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 내역을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, 1인당 평균 31,752,002원으로 추정³⁾

3) 보전청구 후보자 3,565명이고 이중 전액은 3,004명, 반액 561명으로 실제 보전액은 1,042억 8,945만

- 선거비용 보전액은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에 따라 상승하여 2030년 기준 1인당 평균 38,037,913원으로 추정
- 추가 보전율은 ①해당없음(현행법 미달)에서 반액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50%, ②해당없음에서 전액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100%, ③반액에서 전액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50% 적용

[표 5]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과정

구분 (의원정수)	조건	1인당 평균 보전액 (a, 원)	대상자수 (b, 명)	추가보전율 (c)	추가재정소요 (=a×b×c, 원)
2인	①해당없음→반액	38,037,913	16	50%	304,303,304
	②해당없음→전액		0	100%	0
	③반액→전액		98	50%	1,863,857,737
3인	①해당없음→반액		127	50%	2,415,407,476
	②해당없음→전액		62	100%	2,358,350,606
	③반액→전액		380	50%	7,227,203,470
4인 이상	①해당없음→반액		40	50%	760,758,260
	②해당없음→전액		54	100%	2,054,047,302
	③반액→전액		28	50%	532,530,782
합계			805	—	17,516,458,93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추계결과,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30년에 175억 1,6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(국선)	2029	2030(지선·대선)	2031	2032(국선)
선거비용 보전	—	—	17,516	—	—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원임. 전액·반액 그룹별 평균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"반액 수령자는 동일 지출을 기준으로 전액 수령자의 정확히 절반을 받는다"는 가정 하에 산출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30년 184억 1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8 (국선)	2029	2030 (지선대전)	2031	2032 (국선)	합계
기탁금 반환 기준 완화	—	—	895	—	—	895
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	—	—	17,516	—	—	17,516
합계	—	—	18,411	—	—	18,41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수, 득표율, 선거비용 보전 집행액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assembly.go.kr